

工業所有權 相談解説

出願中인 發明의 閱覽 등

問 ① 제가 生産하고 있는 製品을 다른 사람이 特許出願하였다든 소문을 들었다는데 出願中인 發明의 內容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方法은 없는지요?
 ② 特許出願의 公開과 公告를 하는 理由와 그 差異는 무엇입니까?
 ③ 商標가 出願公告되던 出願人은 어떠한 權利가 생기게 됩니까?

答 ① 出願된 內容은 特許法 施行規則 第26條에 의하여 그 秘密을 保障하게 되어 있으므로 一定期間이 지나서 公開되거나 出願公告된 경우가 아니면 그 內容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出願된 內容을 알기 위해서는 出願된 發明이 出願日로부터 1年 6個月이 지나서 公開된 때에 公開公報에 의하거나 또는 公開와는 別途로 出願公告가되는 경우에는 公告公報에 의하여 그 內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國防上 秘密을 要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公開하지 아니합니다.

② 特許出願의 公開는 出願日로부터 1年 6個月이 經過된 때에 公開公報에 의하여 行하여지고 있으며 그 理由는 出願件數의 累增으로 審査가 지연되고 있는 出願을 早期에 公開함으로써 企業活動의 不安과 同一發明의 重複出願이나 重複研究 및 重複投資를 防止하기 위한 것입니다.

그리고, 特許出願의 公告는 審査官이 出願을 審査한 結果 拒絕理由를 發見하지 못하였을 때에 一般에게 그 內容을 알리어 그 出願이 特許될 수 없는 理由를 發見한 사람은 누구든지 異議申請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審査의 完벽을 기하고 또한 不實權利를 米연에 防止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特許出願의 公開나 公告는 技術의 公開를 成就시키는 手段이지만 公開와 公告의 效果에는

差異가 있습니다.

出願公告의 效果로서는 假保護權이 發生하므로 出願公告된 發明을 他人이 實施하면 그 他人에 대하여 侵害禁止 請求權, 損害賠償請求權, 使用回復 請求權 등을 行使할 수 있으며, 出願公開의 效果로서는 그 出願이 出願公告된 경우에는 出願公開 後부터 出願公告前까지 그 發明을 實施한 者에 대하여 通常 받을 수 있는 補償金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.

③ 商標의 出願公告 制度는 商標의 公益性和 出願商標의 多樣性에 비추어 特許廳 內部的 審査만으로는 不足하다는 見地에서 商標로서의 權利를 設定 登錄하기 전에 이를 一般에게 公開하여 公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各界의 意見을 듣고 異議가 있으면 異議申請을 할 수 있게하여 審査에 公正性和 完全性에 接近코자 하는 하나의 節次的인 制度로서 商標의 出願公告만으로는 아무런 權利가 발생하지 않고 商標로서 權利를 設定, 登錄하여야만 그 登錄日로부터 起해서 商標權이 發生하는 것입니다.

그러나 特許나 實用新案은 出願公告되던 그 때부터 假保護의 權利가 發生하는 것이나 이는 技術的 創作을 公開하는 代價에 비추어 商標와는 그 本質을 달리하고 있기때문입니다. <※>

(金永吉(辨理士·金永吉 國際特許法律事務所長))

新 刊 案 內

國際工業所有權法

〈韓·美·日·英·獨·佛·파리條約·PCT·EPC 制度 총 망라〉

■ 辨理士 金 永 吉 編

■ 4·6倍版: 1,664面(부록포함)

■ 價 格: 74,000원

■ 刊 매 처: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